

도 특별지원금 C

道内事業者の皆様へ
道特別支援金
時短・外出自粛等による影響緩和

개요

8월 이후 긴급사태조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경영 악화가 심해진 홋카이도 전역의 폭넓은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휴업·영업시간단축 등의 협력지원금이나 국가의 월차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새롭게 도 특별지원금 C를 마련해 지원합니다.

요건 1

① 시간단축대상 음식점 등 과의 거래 업체

※ 농어민 및 음식료품, 일회용 젓가락, 물수건 등
음식업에 제공하는 재화·서비스 공급업자

또는

② 외출·왕래 자제요청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업자

※ 여관, 기념품점, 관광시설, 택시사업자,
미용관계자, 각종 교실, 상점, 낮영업 음식점
등 이용자 감소 영향을 받은 사업자

요건 2

**2021년 8월~2021년 10월 사이 월 매출액이
전년대비 또는 전해 같은달 대비 30~50%미만 감소**

※ 매출액을 전년과 비교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특례조치**도 실시

금부액

중소기업 등 **20**만엔
개인 사업자 등 **10**만엔

신청접수 기간

2021년 **10월 12일**~2022년 **1월 31일**

문의처

홋카이도특별지원금 콜센터 TEL : 011-351-4101

이용시간 8:45~17:30 (평일만) ※ 10월 중에는 토요일도 대응

주 1: 요건 1의 ①은 시간단축대상 음식점 등 (2021년 8월~10월 사이에 홋카이도지사에 의해 시간단축·휴업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자)과 직·간접 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 2: 요건 1의 ②는 홋카이도내 외출·왕래 자제요청 등에 의한 손님 수 감소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 3: 도 특별지원금 C는 도 특별지원금 A 및 B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4: 2021년 8월~10월 사이에 휴업·시간단축 대상이었던 음식점이나 시설 등은 시간단축 등에 대한 협력이나 시간단축지원금 수급과 상관없이 **본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 5: 도 특별지원금 C는 **국가의 월차지원금(8월분 이후)**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중복수급 불가)

도 특별지원금 대상 이미지

★ <도 특별지원금>에 새롭게 <도 특별지원금C>를 마련합니다.

8월 이후 만연방지조치 등 중점 조치나 긴급사태조치로 인해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도 전역의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휴업이나 시간단축에 대한 협력지원금 혹은 국가의 월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달 대비 30~50% 미만 감소)을 위해 새롭게 <도 특별지원금C>를 지원합니다.

	← 매출 50%이상 감소	← 매출 30~50% 미만 감소
2020년도 11~3월의 영향	<p>[국가의 일시지원금]</p> <p>법인상한 60만엔 개인상한 30만엔</p>	<p>국가의 일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분 (국가에 신청하지 않은 분 포함)</p> <p>[도 특별지원금A]</p> <p>법인 20만엔 개인 10만엔</p> <p>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p>
2021년도 4~7월의 영향	<p>[국가의 월차 지원금 (4~7월분)]</p> <p>법인 상한 20만엔 개인 상한 10만엔</p> <p>접수 종료</p>	<p>[도 특별지원금B]</p> <p>법인 10만엔 개인 5만엔</p> <p>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p>
2021년도 8월 이후의 영향	<p>[국가의 월차지원금 (8월 이후 분)]</p> <p>법인상한 20만엔 개인상한 10만엔</p> <p>8월분 접수중: 9월 1일~10월 31일 9월분 접수중: 10월 1일~11월 30일 10월분(예정): 원칙, 대상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접수</p>	<p>[도 특별지원금C]</p> <p>법인 20만엔 개인 10만엔</p> <p>2022년 1월 31일까지 접수</p>

※ 이 그림은 각 지원금의 대상자를 이미지화한 것으로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는 요망 등에서 확인하세요.

※ 도의 특별지원금 A·B·C는 각각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도의 일시지원금과 도의 특별지원금A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 도의 월차지원금(4~7월분)과 도의 특별지원금B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 도의 월차지원금(8월 이후분)과 도의 특별지원금C는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